

(참조)

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□ 제안이유

- 상이경도 상위급수인 상지계통상이자도 보철용자동차를 운전할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
- '91년부터 새로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부과기준의 변경(기통수 → 씨씨당)에 부합토록 개정
- 시,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'92부터 도세로 조정됨에 따른 개정

□ 주요골자

- 자동차의 기준 조정 : 4기통 → 2,000씨씨 이하
-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대상 추가 : 하지계통상이자 + 상지계통상이자
- 면제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 추가
 - 면제세목 : 취득세, 등록세, 면허세 + 소방공동시설세

□ 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9조
-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[별표3]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.

- 위원장대리 김기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문위원 민귀식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도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였습니다. 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.

(참 조)